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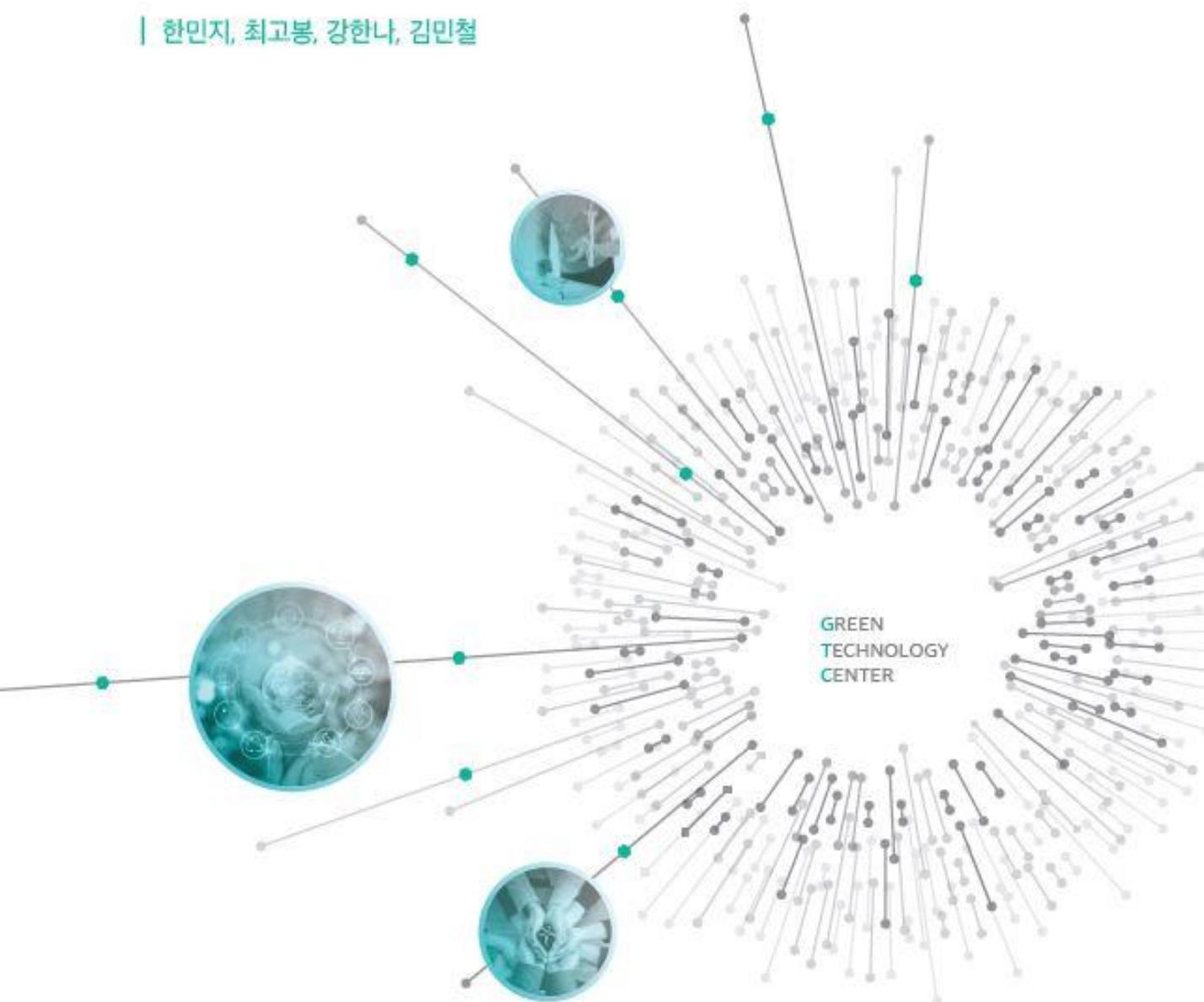


GTC FOCUS

2021
Vol.2 No.3

유럽연합의 ESG 동향과 국내에의 정책적 시사점

| 한민지, 최고봉, 강한나, 김민철



GTC FOCUS

| 2021
Vol.2 No.3

유럽연합의 ESG 동향과 국내에의 정책적 시사점

| 한민지, 최고봉, 강한나, 김민철

유럽연합의 ESG 동향과 국내에의 정책적 시사점

| 한민지, 최고봉, 강한나, 김민철

| ESG, 녹색 분류체계, 지속가능성, 택소노미, 공시제도

- | | | |
|---|-----------------------|----------|
| 1 | 서론 | p. 1~2 |
| 2 | 국제사회 ESG 논의와 동향 | p. 3~11 |
| 3 | 유럽연합의 ESG 체제발전 및 관련법제 | p. 12~20 |
| 4 |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국내 ESG 체제 | p. 21~25 |
| 5 |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p. 26~29 |
| | 참고문헌 | p. 30~31 |

요약

1. 현 시대가 마주한 지속가능성 위기 대응을 위한 ESG 추진 가속화

- ◆ (ESG* 추진 확대) 국내외 민간 금융권에서의 ESG 투자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ESG 공시제도 도입 및 의무화 역시 확대되고 있음
 -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 각 단어의 첫머리를 딴 약어로 기업의 가치평가측정에 사용되는 비재무적인 지표를 뜻함
 - (ESG 투자) 총 순자산 대비 ESG 투자 비중과 ESG 펀드·채권 규모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기관투자자가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한 원칙인 스투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한 국가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여 개국(2021.1. 기준)
 - (ESG 공시) 84개국에서 ESG 공시를 도입(2020 기준)하였으며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율 역시 급격히 상승 중
- ◆ (ESG와 기후변화·탈탄소) 글로벌 공동의 기후변화 목표달성 노력에서 기업의 탄소감축 기여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평가) 자산운용사의 투자기준에 기업의 기후리스크 공시가 포함되는 등 기업경영에서의 기후영향 최소화 요구가 점차 거세짐에 따라, 기업이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의 재무적 영향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움직임이 증가

2. ESG 생태계의 활성화와 환경(E)부문의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

- ◆ (ESG 생태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ESG 관련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으며, 국제 ESG 생태계는 크게 7개의 이해관계자 그룹(프레임워크개발기관, 표준개발기관, 보증기관, 데이터제공기관, 의결권자문사, 범 연합체 및 이니셔티브, 투자자 연합체 및 이니셔티브)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음
- ◆ (환경부문 정보공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국제 표준인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은 환경부문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안은 환경 중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공개 권고안을 마련함

- * GRI는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임
- ** TCFD는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위험과 기회를 의사결정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GRI 표준의 환경부문은 원재료, 에너지, 용수 및 폐수, 생물다양성, 배출, 폐기물, 환경적 규범 준수, 공급업체 환경평가 등 총 8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총 32개의 지표를 마련하여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음
- TCFD의 권고안은 총 4개의 권고 부문에 대하여 총 11개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며, 단순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표나 목표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측면에서 밝혀야 할 정보를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3. 유럽연합 ESG 규제입법과 체제변화

- ◆ (정책의 핵심기조로 지속가능성)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과 유럽연합의 장기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지속가능성을 핵심 기조로 정책을 수립 및 구체화하고 있음
- ◆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ESG규제입법)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탄소노미 규칙(Regulation (EU) 2020/852)」을 제정하고 ESG를 구속력 있는 표준으로 입법화 함
 - * 「EU 탄소노미 규칙」은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정해진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유럽연합 내에 통용되는 녹색분류체계 시스템을 위한 준거법임
 - 이는 무엇보다 기후변화가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옴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유럽연합이 '탈탄소, 기후중립' 등을 달성하기 위한 '녹색성' 정도를 구별하기 위해 「EU 탄소노미 규칙」을 도입하고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시도하는 것임
- ◆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정보공시의무) 「EU 탄소노미 규칙」이 도입되면서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비재무정보를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기업에게 부여되었으며, 동법은 이를 통해 '녹색성'과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판단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국내의 지속가능성과 ESG 논의

- ◆ (지속가능성 법제화) 국내의 지속가능성 논의는 국가 내부적(환경문제발생)·외부적 요인(국제적 논의의 활성화)이 중첩되어 진행되었으며, 2008년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조에 '지속가능성'이 정의되면서 법제화되었음
- ◆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위협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국내의 법·정책적 방향 또한 기후변화를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논의하고 있음
- ◆ (기후변화 위기와 국제사회의 흐름반영) 세계적 흐름에 따라 국내 ESG 논의 또한 기후변화를 이유로 급부상하였고, 이와 관련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 ESG의 통일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및 사회를 구축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시작된 ESG 규제입법이 이러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 함

- ◆ (국내 ESG 지표의 개발) ESG를 평가하기 위한 국내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자체적 제도 마련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 중 대표적으로는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스'(2021.1)에 따른 권고지표 제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모범규준 개정 및 발표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K-ESG 지표 개발 등이 있음
 - 관련 지표들은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 '최소한'으로 포함되어야 할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권고지표들은 기업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지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제한적이며, ESG 정보공개에 '충분한' 지표라고 해석될 우려가 있고, 국·내외 공신력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 등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5. 국내의 ESG 체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

- ◆ (ESG 가이드라인 확장 및 공신력 확보) 환경(E)부문에 대해 더 넓은 범위에서 관련 지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국내외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국내의 ESG 지표는 각 산업 및 기업별로 중요성에 따라 적절한 정보공개 주제와 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향후 가이드라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 ESG 지표는 국제적인 지표와 통일성을 만족하면서 국내외 공신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법제화 되어 있는 유럽연합의 ESG 지표와 호환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국내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을 우려가 크기 때문임
- ◆ (정부 차원의 ESG 활성화 체계 마련) ESG 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영역이나, 정부는 공공영역에서의 ESG 활성화 및 기반 조성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환경(E)부문 추가, ESG 인증제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체계 확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체계 중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회(S)·지배구조(G) 항목뿐만 아니라 환경(E)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ESG 인증제 도입) 정부가 정하는 ESG 기준에 부합한 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법정인증제도로써 ESG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음



서론

1.1 연구의 배경

▣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대두

- ◆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기후변화와 코로나 팬데믹 등 유래 없는 복잡한 사회문제가 전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다시금 토론의 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그동안의 경제모델 또는 거버넌스의 형태와 사고방식 등을 전면 재조정하는 인류 전체의 전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인식됨
 - 특히 지구의 자정 능력이 한계 밖으로 벗어남으로써 작금의 상황이 벌어진 가장 큰 원인으로 시장 자본주의가 지적되고 있으나, 오히려 시장 자본주의를 역이용하여 현행 상황을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즉, ‘경제’와 ‘환경’을 대립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병존 및 양립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상호 공존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임
- ◆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슬로건 하에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구조를 수립하겠다는 국가차원의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지속가능성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D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설명하며 등장하였고, 이후 1992년 유엔환경개발 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는 환경에 초점을,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는 경제와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논의하였음¹⁾

1) 안드레스 R. 에드워즈, 2010, 지속가능성 혁명, 시스템아, 41면.

- 2015년 유엔총회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17개의 주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가 담긴 '지속가능성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여 환경·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아우르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설정함

▣ 지속가능성을 기치로 한 기후변화 대응방식

- ◆ 최근에 와서 '지속가능성'은 현재의 기후위기 대응과 맞물려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국가와 인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열쇠로 간주되면서 개별 국가들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슬로건 하에 선제적인 법·정책적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음
 - 한국 또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을 마련 및 추진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 시대에 직면했음을 인식하고 선제적인 대응과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기치로 국가운용의 방향전환을 시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국가는 유럽연합으로 보이며, 유럽연합은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대대적인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를 꾀하고 있음

▣ 기후변화의 대응 방식으로써 유럽연합의 ESG 규제입법

- ◆ 이 중 유럽연합의 ESG 규제입법이 세계적인 인프라 혁명을 유도하면서 국제사회의 사회·경제·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의 생태계를 재정립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1.2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생존의 열쇠와 기후위기 해법으로서의 지속가능성과 ESG

- ◆ 지속가능성은 주로 생태 및 환경을 다루는 논의와 대의명분으로 다뤄져왔으나, 현재는 그 외연이 확장되어 사회 전 부문에 걸친 논의들과 씨실과 날실처럼 엮어서 하나의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로 변하고 있음
 - 유럽연합이 시도하고 있는 ESG 규제입법은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지속가능성으로 치환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은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 또한 ESG가 갑자기 떠오른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유로 유럽연합에서 국가 및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식으로 ESG가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럽연합이 ESG 체제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살펴볼 때 유럽연합의 가치사슬 안에 있는 국내 기업을 향한 시사점이 클 것으로 보임
- ◆ 본 포커스에서는 유럽연합의 ESG 규제입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방향을 살펴보되, 기후위기 해법을 위한 환경(E)지표에 논의의 중점을 두기로 함



국제사회 ESG 논의와 동향

2.1 ESG 논의 전개

- ◆ (지속가능발전 차원의 ESG 등장) 1987년 UN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기점으로 국제사회 아젠다로 등장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특히 금융·투자·경영 업계에서의 ESG 논의로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ESG 논의 움직임은 지속가능성,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시대적 상황 대응에 필요한 기업경영의 뉴 패러다임으로써 기업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
 - 즉, 이제 ESG는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넘어 국제적인 지속가능금융²⁾ 주류화 속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영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
- ◆ (국제사회에서의 ESG 논의) UN 등의 국제기구 및 단체, 글로벌 투자·자산 운용사는 기업 경영에 환경과 사회 문제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에 요구되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및 보고체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옴
 - 1999년 미국 비영리 지속가능성 단체인 세레스(Ceres)와 유엔환경계획(UNEP, UN Environment Programme)을 중심으로 설립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으며,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이행계획³⁾에 기업 보고의 권고사항으로 포함된 이래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2016년 GRI 표준으로 정립됨
 - 2005년 UN 글로벌컴팩트의 'Who Cares Wins' 컨퍼런스 보고서에서 ESG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UNEP 금융 이니셔티브(FI, Finance Initiative)와의 협업을 통해 2006년 UN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⁴⁾이 발표됨
 - 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⁵⁾)는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의 재무적 영향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함

2)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이끌기 위해 재정부문 투자결정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

3) Para.18 기업의 환경·사회 책임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GRI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를 권고 (UN, 2002)

4) UN PRI는 투자 의사 결정에 ESG 요소 고려, 투자대상 기업의 ESG 정보 공시 등 6개 원칙으로 구성

5) G20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해 2015년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

- 2019년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 협의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Business Roundtable)의 새로운 목적(New Purpose)과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 선언에서 주주의 수익 뿐 아니라 소비자·근로자·지역사회 등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개념이 등장하며 ESG 경영 기준으로 명문화 됨
- 2021년 다보스 아젠다에서 61개 글로벌 초우량 기업은 ESG 요소가 포함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표(SCM,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를 경영의 핵심지표⁶⁾로 채택하게 됨

2.2 ESG 생태계 및 현황

2.2.1 ESG 생태계의 구성과 주요 이해관계자

- ◆ ESG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ESG 관련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세부적인 ESG 관련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종류와 기능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 WEF는 현재 ESG 관련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9년에 'ESG 생태계 지도(ESG Ecosystem Map)'를 개발하여 ESG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룹과 이해관계자를 체계화하여 정리함
 - WEF의 ESG 생태계 지도는 아래와 같이 크게 7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⁷⁾ 각 그룹별 주요 이해관계자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음
 - ① 프레임워크개발기관(Framework Developers): 원칙에 기반한 개념(principle-based concepts)을 제시하여 기업이 발표하는 ESG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며, 최적의 정보공개 방법과 장기적 가치창출의 관점에서 보고 관행을 고려하는 방법, 연차보고 관행에서 ESG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 ② 표준개발기관(Standard Setters): 기업이 어떠한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ESG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관이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기업과 규제기관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ESG 지표와 해당 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함
 - ③ 보증기관(Assurers): 기업이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기업이 공개하는 비재무정보에 대해 보증하는 기관임
 - ④ 데이터제공기관(Data Providers): 각 회사가 공개하고 있는 ESG 정보를 취합하여 보고서, 지수, 순위 등의 형태로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시장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Data Providers: Market), ESG와 관련된 정보만 제공하는 기관(Data Provider: ESG-Exclusive), 한 개 이상의 특화된 ESG 부문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기관(Data Provider: Specialized)으로 구분할 수 있음

6)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표(SCM,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는 Principles of governance(거버넌스), Planet(지구), People(사람), Prosperity(번영) 으로 구성

7) WEF의 ESG 생태계 지도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 그룹의 설명은 WEF ESG Ecosystem Map 홈페이지 (<https://wigtents.weforum.org/esgecosystemmap>) (검색일: 2021.8.22.)와 WEF(2019)를 바탕으로 작성함

- ⑤ 의결권자문사(Voting and Engagement Services): ESG 전반 또는 특정 이슈에 대해 초점을 맞춰 분석을 수행하여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임
- ⑥ 범 연합체 및 이니셔티브(Broader Coalitions and Initiatives):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이 중요한 ESG 성과를 보다 우수하게 측정하거나 벤치마킹 하는 방법, 향상시키는 방법, 보고하는 방법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 ⑦ 투자자 연합체 및 이니셔티브(Investor Coalitions and Initiatives): ESG와 관련된 투자자 이슈에 대해서 공동으로 논의하기 위한 투자자 모임으로 종종 협약 또는 원칙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왔으며, 일부는 ESG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쳐왔음

[표 2-1] ESG 생태계 그룹별 주요 이해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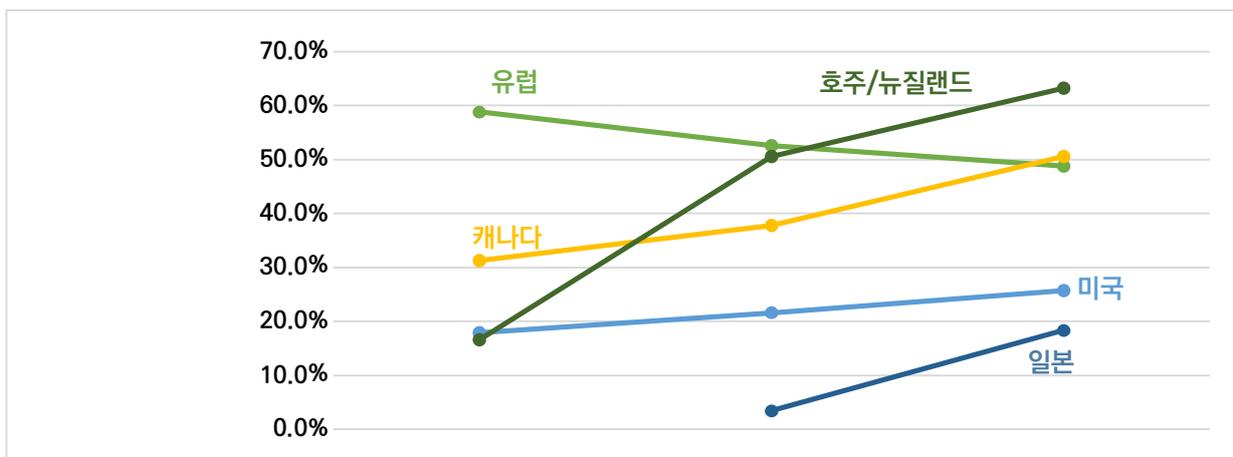
구분		주제
① 프레임워크개발기관		UN Global Compact,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TCFD,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Science Based Targets, Future-Fit Business Benchmark, Accountability, Corporate Reporting Dialogue,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Singapore Exchange
② 표준개발기관		Global Reporting Initiative,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Greenhouse Gas Protocol
③ 보증기관		KPMG, PricewaterhouseCoopers, EY, 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 CVS, Deloitte, Bureau Veritas,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④ 데이터제공기관	시장정보	Bloomberg, MSCI, Thomson Reuters, FTSE Russell, Standard & Poor's Global Ratings
	ESG정보	Sustainalytics, Arabesque, RobecoSAM, CSRHub, Vigeo Eiris, Instit. Shareholder Service-oekom, Truvalue Labs
	특화정보	formerly Carbon Disclosure Project, RepRisk, Carbon Delta, trucost
⑤ 의결권자문사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Hermes Equity Ownership Service, Glass Lewis
⑥ 범 연합체 및 이니셔티브		World Benchmarking Alliance, Impact Management Project, Social and Human Capital Coalition, 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 Lab, Natural Capital Coalition
⑦ 투자자 연합체 및 이니셔티브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Climate Action 100+, 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Global Investor Coalition on Climate Change, Asia Sustainable Finance Initiative, Investor Alliance on Human Rights, UNEP-Finance Initiative, 2 degrees Investing Initiativ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 출처: WEF ESG Ecosystem Map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검색일: 2021.8.22.)

2.2.2 ESG 관련 현황

- ◆ (국내외 ESG 관련 현황) 민간 금융권에서의 ESG 투자규모가 급증하는 추세⁸⁾이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ESG 공시 제도 도입 및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음
 - (ESG 경영) UN PRI 서명기관은 2021년 4,157개(7월 기준)이며*, 이들의 운용자산 규모는 121.3조 달러(3월 기준)에 달함(UN PRI, 2021)
 - * 단, 최근 네덜란드 투자기관 전문가 주도로 발표한 ‘자산운용사의 지속가능한 투표행태’ 논문에서는 상당수의 UN PRI 서명기관이 책임감 있는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서명기관 가입 요건과 평가를 강화할 것을 제안(de Groot *et al.*, 2021)
 - (ESG 투자) 주요국 기준 총 순자산 대비 ESG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며[그림 2-1], ESG 펀드와 채권 규모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⁹⁾하고 있음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과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한 국가는 2021년 1월 기준 20여 개이며, 국내에서는 4개의 연기금*을 포함하여 160여 개의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이 참여하고 있음¹⁰⁾
 -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그림 2-1] 2014-2018년 총 순자산 대비 ESG 투자 비중



지역	2014	2016	2018
유럽	58.8%	52.6%	48.8%
미국	17.9%	21.6%	25.7%
캐나다	31.3%	37.8%	50.6%
호주/뉴질랜드	16.6%	50.6%	63.2%
일본	-	3.4%	18.3%

※ 출처: GSIA(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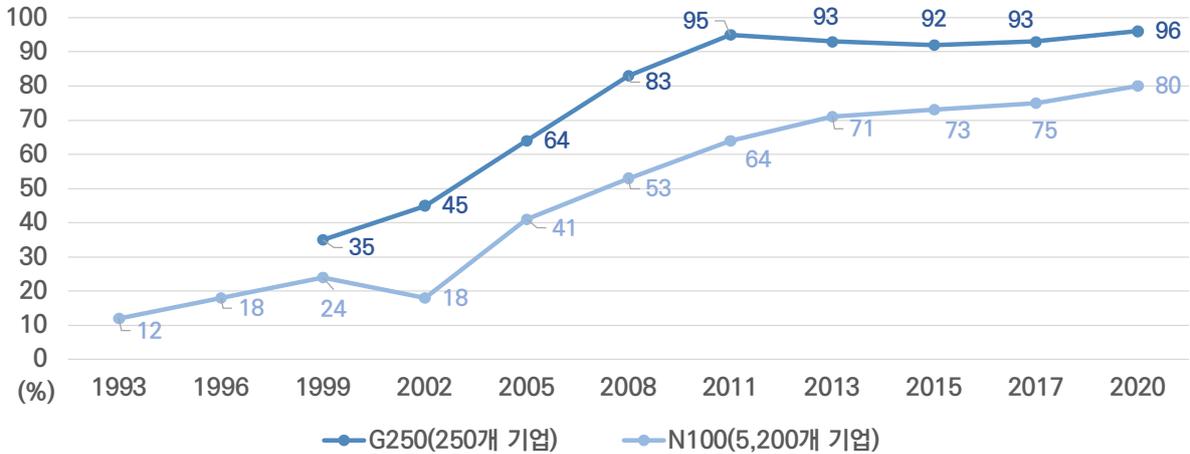
8) ESG 투자규모는 2020년 6월 기준 40.5조 달러(금융위원회, 2021) (단, ESG 정의 및 평가기준의 일관성 및 통일성 결여로 인해 투자규모 추정치에 유의한 편차가 존재)

9) 글로벌 ESG 펀드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1조 달러를 최초로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ESG 채권은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채권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글로벌 녹색채권 발행총액은 2020년 말 기준 1조 달러를 돌파, 국내의 경우 상장종목 총 549개 및 상장잔액 82.6조원으로 빠르게 성장 중(금융위원회, 2021)

10)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 내 참여 현황 정보(<http://sc.cgs.or.kr/participation/investors.jsp>)(검색일: 2021.08.12.)

- (ESG 공시규제) 국제적으로 ESG 공시를 도입한 국가는 2020년 기준 84개국으로 유럽 등 주요국에서 공시 의무 확대¹¹⁾를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유망기업 대상 지속가능보고서 보고현황 조사¹²⁾에 따르면 2002년부터 보고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그림 2-2]

[그림 2-2]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율의 증가 추이



참고: N100(5,200개 기업)과 G250(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함. N100은 KPMG가 52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 기업을 추출해 구성, G250은 2019년 포춘(Fortune)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 매출액 기준 상위 250개 기업을 의미

※ 출처: KPMG(2020); 삼성KPMG 경제연구원(2021), p. 14에서 재인용

- ◆ (ESG와 기후변화·탈탄소) EU 집행위원회의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발표,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제출시한 도래 등이 모멘텀으로 작동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탄소 다배출 기업을 중심으로 TCFD 기준에 맞춘 기후리스크 공시와 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것을 요구¹³⁾하여 왔으며, '20년에는 주주총회에서 투표(voting)를 통해 기후 리스크 관리나 정보 공시가 소홀한 53개 기업의 의안에 반대권한을 행사한 바 있음(BlackRock, 2020)
 - TCFD 지지를 선언한 기업·기관의 수는 1,500여개로 여기에 속한 700개 이상 금융회사가 담당하는 자산의 총액은 150조 달러에 달하며, 세계 100대 상장기업 중 60% 이상이 TCFD를 지지하거나 권고안에 맞춘 보고를 이행하고 있음(TCFD, 2020)

11) 국내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3단계 추진계획에 따르면 ESG 공시 의무는 2025년 이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30년 이후 코스피 전 상장사로 도입·확대될 예정

12) KPMG. 2020. The time has com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0. KPMG Impact.

13) 블랙록 투자 스튜어드십(BIS: 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의 기업 E(환경) 부문 주주관여(engagement)는 2018-2019년 316건에서 2019-2020년 1,230건으로 289% 상승(BlackRock, 2020)

2.2.3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환경(E)부문을 중심으로

- ◆ 기업의 ESG 정보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 부문에 대해서 중요성에 의해 선택된 주제에 따라 필요한 지표를 공개하며, 각 부문에 어떠한 주제가 포함될 수 있고 어떠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다양한 기관 및 이니셔티브가 제시하고 있는 ESG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수 제시된 바 있음
- ◆ 본 절에서는 최근 기업 및 투자자의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핵심적인 배경 중 하나인 기후변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기후변화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환경(E)부문의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GRI 표준 (GRI Standards)

- ◆ 2016년 정립된 GRI 표준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국제표준이며 크게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과 ‘특정주제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E)부문에 대한 지표는 주로 특정주제 표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공통 표준은 기초(GRI 101), 일반공개(GRI 102), 경영접근 방식(GRI 103) 세 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
 - 특정주제 표준은 경제(GRI 200), 환경(GRI 300), 사회(GRI 400)부문의 하위에 각 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 상의 환경(E)부문과 관련된 주제와 지표는 GRI 표준의 환경(GRI 300)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단 [표 2-2]와 같이 환경(GRI 300번 대)부문뿐만 아니라 일반공개(GRI 102) 주제 안에 지배구조와 관련된 지표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지표(GRI 102-20, 21, 29, 31)가 마련되어 있음
- ◆ GRI 표준에서 환경부문은 [표 2-2]와 같이 원재료, 에너지, 용수 및 폐수, 생물다양성, 배출, 폐기물, 환경적 규범준수, 공급업체 환경평가 등 총 8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지표로는 총 32개의 지표가 마련되어 있어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주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원재료(GRI 301)에 대한 지표로 ‘재활용된 원재료의 사용(GRI 301-2)’과 ‘제품 및 포장재의 수집, 재사용, 또는 재활용(GRI 302-3)’이 포함되는 등 단순히 투입되는 원재료의 총량의 아니라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지표를 제시함
 - 배출(GRI 305)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온실가스 배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기오염 물질(오존층 파괴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배출도 폭 넓게 포함하여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의 사업영역 및 범위에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GRI 308)도 주제로 포함하여, 정보공개 기업의 상류 부문(upstream)에 대한 환경적 특성도 유기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됨

[표 2-2] GRI 표준 내 환경(E) 관련 정보공개 지표

구분	주제	번호	지표
공통표준	일반공개 (GRI 102)	102-20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주제에 대한 임원의 책임
		102-21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102-29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식별과 관리
		102-31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주제에 대한 검토
특정주제표준: 환경부문	원재료 (GRI 301)	301-1	사용한 원재료의 중량 또는 부피
		301-2	재활용된 원재료의 사용
		302-3	제품 및 포장재의 수집, 재사용, 또는 재활용
	에너지 (GRI 302)	302-1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
		302-2	조직 외부 에너지 소비
		302-3	에너지 집약도
		302-4	에너지 소비 감축
		302-5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303-1	공유자원으로서 물과의 상호관계
	용수 및 폐수 (GRI 303)	303-2	물 방류 관련 영향에 대한 관리
		303-3	취수
		303-4	물 방류
		303-5	물 소비
		생물다양성 (GRI 304)	304-1
	304-2		생물다양성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 제품, 서비스
	304-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304-4		사업 영향지역 내 서식지가 존재하는 멸종위기종 및 국가보호종
	배출 (GRI 305)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305-6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량
		305-7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량
	폐기물 (GRI 306)	306-1	폐기물 발생량 및 중요한 폐기물 관련 영향
		306-2	중요한 폐기물 관련 영향에 대한 관리
		306-3	폐기물 발생량
		306-4	바로 처분되지 않은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회수 등)
		306-5	바로 처분된 폐기물
	환경적 규범준수 (GRI 307)	307-1	환경법 및 규제 미준수
공급업체 환경평가 (GRI 308)	308-1	환경 기준을 활용한 심사를 통과한 새로운 공급자	
	308-2	공급사슬에서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과 조치	

※ 출처: GRI(2020) 및 한국거래소(2021)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TCFD 권고안

- ◆ 2017년 TCFD는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 권고안은 환경(E)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음
 - TCFD 권고안은 크게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감축목표에 대한 4개의 권고(recommenda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권고의 하위에 권고 정보공개(recommended disclosure)가 2~3개가 포함되어 총 11개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며, 각 권고와 권고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은 [표 2-3]과 같음

[표 2-3] TCFD 권고안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감축목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를 공개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실질적 및 잠재적 영향을 공개합니다.	조직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해당 정보가 재정적으로 중요한 경우 연관된 기후변화에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와 감축목표를 공개합니다.
권고 정보공개	권고 정보공개	권고 정보공개	권고 정보공개
a)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을 설명합니다.	a) 조직이 단기, 중기, 및 장기간에 걸쳐 파악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설명합니다.	a)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a) 조직이 전략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를 공개합니다.
b)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b)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b)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b) Scope1, Scope2,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Scope3 온실가스 (GHG) 배출량 및 관련 위험을 공개합니다.
	c) 2°C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고려한 조직전략의 회복 탄력성을 설명합니다.	c)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합니다.	c)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기회 및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사용하는 대상을 설명합니다.

※ 출처: TCFD(2017), 한국거래소(2021) p. 35에서 재인용

- ◆ TCFD 권고안은 단순히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표나 목표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측면에서 상세하게 어떠한 정보를 밝힐 필요가 있는지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단순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현재 상황과 목표치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반영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 및 투자기관은 종합적인 정보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스크리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TCFD 권고안이 가지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TCFD(2020)의 조사에 따르면 권고안 발표 이후 11개의 권고안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는 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TCFD(2020)는 1,701개 기업의 정보공개에 대해 조사했으며, 2019년 기준 TCFD 권고안을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의 평균적인 공개 비율은 에너지 산업*이 40%로 가장 높았으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미디어 산업은 13% 수준으로 가장 낮았음 ([표 2-4] 참고)

* 에너지 산업: 석유·가스산업, 석탄산업, 유틸리티산업으로 구성된 산업

- 특히 모든 산업에 대해서 11개 권고 정보공개 중 '전략 -(c): 조직전략의 회복 탄력성'의 정보 공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기업의 기밀정보 공개의 어려움*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의 기밀을 유지하면서도 해당부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TCFD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략부문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로 46%의 응답자가 '기업의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시나리오 분석 가정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략-(c)와 관련이 있음 (TCFD, 2020)

[표 2-4] 2019년 산업별 정보공개 비율

권고	권고 정보공개	산업별 정보공개 기업 비율(%)							
		은행	보험	에너지	소재·건축	운송	농식품·임업	기술·미디어	소비재
지배구조	(a)	23	24	42	26	16	20	6	11
	(b)	24	35	45	31	20	21	8	17
전략	(a)	32	49	65	39	38	41	27	27
	(b)	27	21	54	43	30	35	16	25
	(c)	12	8	15	4	2	1	0	2
위험관리	(a)	25	36	39	26	15	21	7	16
	(b)	23	28	38	26	18	26	11	14
	(c)	19	26	30	14	10	14	4	7
지표와 감축목표	(a)	27	26	41	43	37	35	23	31
	(b)	21	19	27	35	27	28	19	24
	(c)	19	22	44	41	35	38	19	29
평균		23	27	40	30	23	25	13	18

※ 출처: TCFD(2020)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유럽연합의 ESG 체제발전 및 관련법제

3.1 유럽연합의 ESG 체제화 배경

- ◆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203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¹⁴⁾와 같은 해 12월 파리협정을 통해 탄생한 신 기후체제의 출범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전 세계에 촉구함
- ◆ 유럽연합은 ‘203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의 핵심인 SDGs를 채택하고,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2 °C 이하로 제한할 것을 확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선포함¹⁵⁾
- ◆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고 향후 유럽연합의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과 ‘탄소 저 배출, 보다 자원효율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핵심적인 열쇠라는 점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럽연합 정책의 핵심의제로 재확인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기조는 사회적 환경·정책적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조약을 통해 인정된다고 함
- ◆ 결과적으로 ‘지속가능성’은 유럽연합의 최우선적 정책수립의 지향점으로 작용하며, 이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핵심정책이 수립됨
- ◆ 유럽연합 위원회는 지속가능성과 유럽연합의 경쟁력확보는 금융 시스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16년 시민사회, 금융부문, 학계 등 20명의 시니어 전문가와 유럽연합과 국제기구를 감독자로 하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고위급 전문가 그룹(HLEG, 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을 조직하고 다음에 대한 조인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①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공공 및 민간 자본의 흐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②환경과 연계된 위험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③관련 정책을 범 유럽차원에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14) <https://sdgs.un.org/2030agenda> (검색일: 2021.8.23.)

15) Brüssel, den 8.3.2018 COM(2018) 97 final, p. 1.

- ◆ HLEG는 2017년 7월 중간보고서를 발행하고¹⁶⁾ 다음 해 1월에 최종보고서를 발표¹⁷⁾하며 우선적 조치로 다음을 권고함¹⁸⁾
 - ①기후완화*의 시작으로써 투자가 가장 필요한 분야를 정의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분류체계(EU sustainability taxonomy)를 수립하도록 함
 - * 기후변화 대응은 크게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두 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완화가 인간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적응은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양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
 - ②투자 결정에 있어서 ESG의 각 요소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의 범위와 한계 및 연장에 있어서 투자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도록 함
 - ③지속가능한 기회와 위험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도록 함
 - ④녹색채권(Green bonds)*을 시작으로 일부 금융자산에 대한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지속가능한 표준을 개발하도록 함
 - * 녹색채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뜻함¹⁹⁾
 - ⑤‘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Sustainable Infrastructure Europe)’을 설립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개발 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 ⑥금융감독과 금융기관에 지속가능성을 확고하게 포함시키도록 함
- ◆ HLEG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지 2개월여 만인 2018년 3월, 유럽연합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럽연합의 기후대응 아젠다를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고위급 회담(High-level conference on Sustainable Finance)’을 개최하고 [그림 3-1]과 같이 다음의 조치를 구체화하도록 함
 - 핵심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일된 금융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뢰 가능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통합분류체계(택소노미: Taxonomy)를 구축하는 데 있음
 - 여기에서 말하는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HLEG의 권고사항에 비추어 ①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조치, ②사회적 목적 ③환경 목표 등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임

16) HLEG. 2017. Interim report of the 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 Financing a sustainable European economy, 12 July 2017.

17) HLEG. 2018. Final report of the 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31 January 2018

18) HLEG. 2018. Final report of the 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31 January 2018, p. 5.

19)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https://sribond.krx.co.kr/contents/01/01010000/SRI01010000.jsp> (검색일: 2021.8.23.); 이시연, 2021, 국내외 ESG 투자 현황 및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 KIF 금융조사리포트, 21면.

[그림 3-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의 구축과제와 대응 조치

 주요 해결과제	 대응조치	
“지속가능성”에 대한 통일적 개념정의 부재	지속가능한 행동을 위한 유럽연합의 분류체계(택소노미)	 신뢰가능 정보
그린워싱(Green Washing) 제품의 위험성	‘녹색’ 상품에 대한 표준과 라벨링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확실성 제공	
은행과 보험 등이 기후 및 환경위험을 불충분하게 고려	자본요청이 기후변화 및 환경위험을 야기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반영했는가를 확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저평가와 무대응	자산배분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금융을 고려하기 위한 기관투자자의 의무 명시	지속가능성과 위험관리
지속가능성을 염두 한 기업의 행동양식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비재무적인 정보에 대한 공시강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행동유도

※ 출처: EU Action Plan(2018), p. 3 재구성²⁰⁾

- ◆ 이에 따라 2018년 5월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입법제안서’가 수립되고²¹⁾ 이를 구체화 및 실행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실무조직인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기술적 전문가 그룹(TEG,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이 구성됨
 - TEG의 핵심과제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큰 맥락에서 기관 투자자와 투자 관리자가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무 안정성과 자산의 가격을 강화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TEG는 ①유럽연합 통합분류체계(EU Taxonomy), ②유럽연합 녹색채권 표준(EU Green Bond Standard), ③유럽연합 기후 벤치마크*와 벤치마크를 위한 공시, ④기후관련 공시 등 총 4가지를 핵심 줄기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 벤치마크란 투자의 운용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지표를 뜻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후 벤치마크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의 의향과 내부구조 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뜻함
 - TEG는 2020년 3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그 사이 유럽연합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된 그린딜(EU Green Deal)*을 언급하며 그린딜 성공에 기여하고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유럽연합 통합분류체계인 ‘택소노미’가 우선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함
 - * 2019년 유럽연합 신임 집행위원장으로 취임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유럽을 최초의 기후중립대륙으로 탄생시키겠다는 포부를 갖고 향후 5년간 유럽연합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그린딜을 제시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①2050년까지 탄소중립달성, ②경제성장과 자원의 이용 분리, ③공정한 전환 등이며 유럽연합의 기후법과 탄소국경조정세의 도입 등이 핵심 조치로 주목받고 있음

20)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180308-action-plan-sustainable-growth-factsheet_en.pdf (검색일: 2021.8.23.)

21) Brussels, 24.5.2018, COM(2018) 355 final 2018/0180 (COD).

- ◆ TEG 는 최종보고서에서 택소노미를 하나의 평가 도구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체계를 위해 다음의 3가지를 기준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하면서 심사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은 제시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함
 - ①경제활동은 유럽연합 택소노미 규칙(Taxonomy Regulation)²²⁾에 있는 6대 환경목표 중 하나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함([그림 3-2]참조)
 - ②경제활동은 6대 환경목표 중 하나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목표에 그 어떤 중대한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됨
 - ③'다국적 기업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Multinational Enterprises)*'과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의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등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안전 보장 조치를 충족해야 함
 - * 동 가이드라인은 OECD가 1976년에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다국적 기업의 운영이 각국 정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다국적 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공통된 권고사항(예: 내국민대우, 인권존중, 경제·사회·환경발전에 이바지 등)을 담고 있음
 - ** 동 이행원칙은 UN 인권 이사회가 2011년에 만장일치로 승인한 글로벌 표준으로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며, 기업 및 인권과 관련된 표준 및 관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그림 3-2] EU 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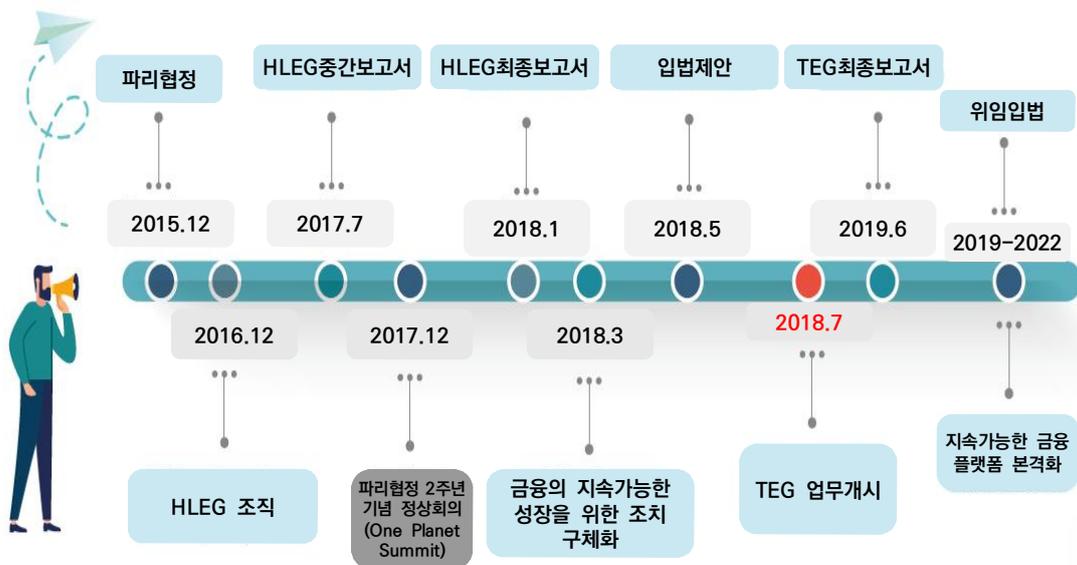
※ 출처: TEG Technical Report (2020), p. 2면 참조 재구성

- ◆ TEG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2020년 7월 12일자로 「EU 택소노미 규칙(Regulation (EU) 2020/852)」²³⁾이 발효되면서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가 본격화되기 시작함

22) 유럽연합의 법원(法源) 중 'Regulation'은 규칙 또는 명령(Verordnung)으로 번역되며,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88조에 따라 발효 즉시 모든 회원국을 직접 구속한다. 유럽연합의 법원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성대규(2021), 유럽연합(EU)의 통합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37면 참조.

23)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그림 3-3] EU 지속가능금융시스템 수립단계



※ 출처: Asset management 홈페이지²⁴⁾ 재구성

3.2 「EU 택소노미 규칙」

▣ 「EU 택소노미 규칙」의의

- 「EU 택소노미 규칙」은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정해진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유럽연합 내에 통용되는 녹색분류체계 시스템을 위한 준거법으로써 녹색분류체계를 위한 세계 최초의 구속력 있는 법규범이라는 데 의의가 있음
- 「EU 택소노미 규칙」이 발효되었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수립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SG가 구속력 있는 표준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연성규범(Soft law)*으로 기능하던 ESG가 유럽연합 내에서 경성규범화 되었음을 의미함
 - * 연성규범이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성규범과 대비되는 용어로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구속력이 있는 법에 준(準)하여 다뤄지는 것으로서 연성규범을 어긴다는 것에 법적책임이 부여되지 않지만, 여러 제반 상황에 비추어 도의적 또는 책임 등이 부여되는 법과 비법(非法)의 사이에 존재하는 법규의 총합을 뜻함
- 이에 따라 「EU 택소노미 규칙」은 유럽연합 전체를 구속하는 법원(法源)으로 기능하게 되었으며, 각 회원국과 유럽연합의 가치사슬 내에 있는 모든 기업 등에게 해당 규정 준수 의무가 부여됨

▣ 「EU 택소노미 규칙」내용

- 「EU 택소노미 규칙」은 유럽 역내에 있는 모든 금융시장참여자들에게 ‘녹색’ 경제활동을 위한 구속력 있는 분류표준을 제공한다는 데 핵심이 있음
-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EU 택소노미 규칙」은 제1조에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정하며, “투자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정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지를

24) <https://www.cpr-am.lu/institutionals/Local-Content/Actualites/Expert-Report-The-importance-of-EU-Taxonomy-on-Sustainable-Finance> (검색일: 2021.8.24.)

판별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함

- ◆ 동법 제1조 제2항은 적용대상을 ‘금융시장참여자’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공시해야 할 의무를 지닌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 * 이는 「연간 재무제표 및 관련 보고서 등에 관한 지침(Directive 2013/34/EU)」에 따른 것으로 여기서 공시해야 하는 비재무제표란 사회와 환경 측면에 대한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ESG와 맥락을 같이함
- ◆ 투자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정도를 전달할 목적으로 동법 제3조는 경제활동이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음
 - ① 동법 제9조의 6대 환경목표(기후보호/기후변화 적응/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순환경제로의 전환/환경오염의 방지와 감소/생물다양성과 생태계시스템의 복원과 보호) 중 하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법 제10조 내지 제1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② 동법 제17조(환경목표에 대한 중대한 위해)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동법 제9조의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가해지는 중대한 침해가 없을 것
 - ③ 동법 제18조(최소보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최소보호를 준수할 것
 - * 동법 제18조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이드라인’,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의 이행 원칙’ 등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안전 보장 조치를 따를 것을 정하고 있음
 - ④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적 평가기준*에 상응할 것
 - * 여기서 말하는 평가기준은 6대 환경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입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후보호와 기후변화 적응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위임입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그 밖의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3-4] 「EU 택소노미 규칙」 제3조에 따른 생태적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분류기준



※ 출처: IBO 홈페이지²⁵⁾ 재인용 및 재구성

25) <https://www.ibo.at/wissensverbreitung/ibomagazin-online/ibo-magazin-artikel/data/eu-taxonomie-verordnung-ein-weg-zum-green-deal-auch-im-immobiliensektor> (검색일: 2021.8.24.)

- ◆ 「EU 택소노미 규칙」에서 정하는 분류체계는 분류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시장의 흐름변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동법 제5조 내지 제7조는 기업에 대하여 보고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관계자 및 투자자들로 하여금 공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있음
 - 동법 제5조는 동법이 정하는 환경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 동법 제6조는 동법이 정하는 분류체계를 고려한 투자에 기반 한 상품이 중대한 침해 방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제7조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의 공시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동법이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적시하도록 강제하면서 동법의 환경목표 준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EU 택소노미 규칙」과 기후변화

- ◆ 유럽연합이 「EU 택소노미 규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선제적이고 확실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으로써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금융의 흐름을 '녹색성'과 연계하여 법·정책적 실효성을 거두고자 하고 있음²⁶⁾
- ◆ 특히「EU 택소노미 규칙」은 6대 환경목표 중 '기후'와 관련된 위임입법 시기를 다른 목표보다 1년 앞당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유럽연합이 탄소중립사회를 달성하고 유럽을 세계 최초의 기후중립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음
- ◆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없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과 인류의 생존여부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우선 과제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점을 유럽연합은 법·정책 수립으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기후변화²⁷⁾를 시장 자본주의를 통해 극복하기 위한 시도으로써 ESG 중 'E.환경지표'를 더욱 강조하여「EU 택소노미 규칙」을 도입한 것임
 - 배출집약적인 산업 및 에너지 부문과 그 밖의 경제 모든 부문이 기후변화 대응에 수렴되지 않을 경우 파리협정의 목표는 물론이고,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기후중립목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데에서 근본적인 대응책이 시급했으며 이로 인해 유럽연합은 금융자본이 흘러들어가는 곳이 기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고 역으로 기후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본 유입을 막음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임
- ◆ 「EU 택소노미 규칙」제 10조(기후보호를 위한 상당한 기여)와 제11조(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상당한 기여)가 기후변화 대응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위한 위임입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된 기술적 표준을 담은 위임입법²⁸⁾이 제정되었음

26) 한민지, 2021, ESG 체제에 따른 유럽연합의 대응과 동향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법과 기업연구 제11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6면.

27) Vgl. Nicholas Stern(2006). Stern Review: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p. 25.

28) Brüssel, den 4.6.2021, C(2021) 2800 final

- 위임입법은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보호와 기후변화 적응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각 부칙에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부칙 I(기후보호를 위한 상당한 기여)’과 ‘부칙II(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상당한 기여)’에 정해놓고 있음

[표 3-1] ‘기후’와 관련한 위임입법 ‘부칙 I’과 ‘부칙II’의 규정 내용

	부칙 I (기후보호를 위한 상당한 기여)	부칙 II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상당한 기여)
1	• 산림	
2	• 환경보호 영역과 복원영역에서 활동	
3	• 기업활동과 상품생산(시멘트, 알루미늄, 철강, 석탄 등)	
4	• 에너지(태양광기술, 풍력, 지열 에너지 등을 통한 전기생산 등)	
5	• 환경오염 제거 및 물관리 시스템, 폐수와 폐기물처리	
6	• 교통(탄소저감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 확대 등)	
7	• 건축 및 부동산(건축물 개보수,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 활용 등)	
8	• 정보제공 및 교환(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9	• 기술혁신(이산화탄소 원천분리기술 등)	
10	/	• 금융 및 보험서비스 마련
11		• 교육
12		• 보건 및 사회부조
13		• 예술, 대화 및 회복

※ 출처: 부칙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부칙 I’과 ‘부칙II’는 [표 3-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규정 범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양대 축인 완화와 적응이 상호보완적이라는 점과 동시에 기후적응을 위한 접근방법이 기후보호와는 상이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
- ‘부칙 I’에 따른 평가기준 중 예컨대 ‘기업 활동과 상품생산’영역에서 철강 제조부문을 살펴보면, 기후보호를 위해 1톤의 철강제품 생산량 당 탄소배출이 다음 [표 3-2]의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3-2] 부칙 I에 따른 철강제조업의 탄소배출량 규제기준

종류	규제기준
액체선철	= 1.331 tCO ₂ eq/t product
철광석 소결(燒結)량	= 0.163 tCO ₂ eq/t product
코크스(갈탄 코크스 제외)	= 0.144 tCO ₂ eq/t product
주철	= 0.299 tCO ₂ eq/t product
고합금 강철(전기로 공정)	= 0.266 tCO ₂ eq/t product
탄소강(전기로 공정)	= 0.209 tCO ₂ eq/t product

※ 출처: 부칙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상기 언급된 부문과 관련하여 ‘부칙 II’는 ①경제활동이 적응방안을 구체화하여 중대한 물리적 기후위험을 현저히 감소시켰을 것, ②부록A에 나열된 물리적 기후위험(온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강수량 변화, 열 스트레스, 토네이도, 지반침하 등)을 취약성 평가를 통해 식별하도록 할 것 등을 평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위임입법은 부칙에 강 항목별, 영역별, 부문별로 평가기준을 세세하게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

3.3 「EU 택소노미 규칙」과 공시 및 보고의무 연계

- ◆ 「EU 택소노미 규칙」은 공시 및 보고의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택소노미에 따른 분류는 기업의 해당 의무와 함께 지속가능한 금융흐름을 유도함
- ◆ 「EU 택소노미 규칙」은 금융관계자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공시의무에 대한 규칙(Regulation (EU)2019/2088):이하 공시규칙」에 따라 기업은 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공시규칙」은 공시내용을 정하며,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로 지속가능성을 선택하고 제2조 제24호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환경, 사회와 인권 및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한 경영조건”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 이로써 ESG지표는 「공시규칙」에 내재화 및 규범화되었음
 - 「공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비재무정보(예: 투자결정 시 지속가능한 위험을 어떻게 산입하여 고려하였는지 여부, 지속 가능한 위험*이 제공하는 금융 상품의 수익에 대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 등)를 공시하여야 하며, 이는 「EU 택소노미 규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운영기재가 되고 있음
 - * 환경, 사회 또는 기업 지배구조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투자 가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실 또는 조건을 의미함
- ◆ 이는 환경책임 불이행에 대한 징벌적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자로 하여금 법이 정하는 목적에 따른 환경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게 투자하지 않도록 행위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변화를 모색할 간접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환경책임이행방식과 차이를 보임²⁹⁾

29) 한민지, 2021, ESG 체제에 따른 유럽연합의 대응과 동향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법과 기업연구 제11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7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국내 ESG 체제

4.1 국내에서의 지속가능성과 ESG 논의 및 동향

▣ 국내 지속가능성 논의

- ◆ 국내의 지속가능성 논의는 국내외 배경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져 옴
 - 국제적으로는 로마클럽이 발간한 1972년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보고서에 따라 경제성장 및 인구폭발이 계속된다면 향후 100년 안에 지구의 모든 자원, 식량 및 환경이 파괴적 사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계기로 ‘과연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함
 - 이후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2000년 유엔 새천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15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등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발전되어 왔으며 이는 국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
 - 1990년대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계기로 1995년 지방자치단체들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의제21’*을 실천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에 이르러 ‘의제21’이 국가실천계획으로 수립됨
 -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 지침으로써 환경과 개발의 양립을 위한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본의 보존 및 관리,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등이 있음
- ◆ 지속가능성이 법제화 된 것은 2008년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시행 하면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언급된 표현을 인용하여 제2조에 ‘지속가능성’을 정의하고 지속가능성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함
- ◆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법의 지위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녹색성장기본법으로 옮겨가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 ◆ 최근 국내의 지속가능성 논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체계 마련, 경제 및 산업 구조의 지속가능성 향상, 사회적 형평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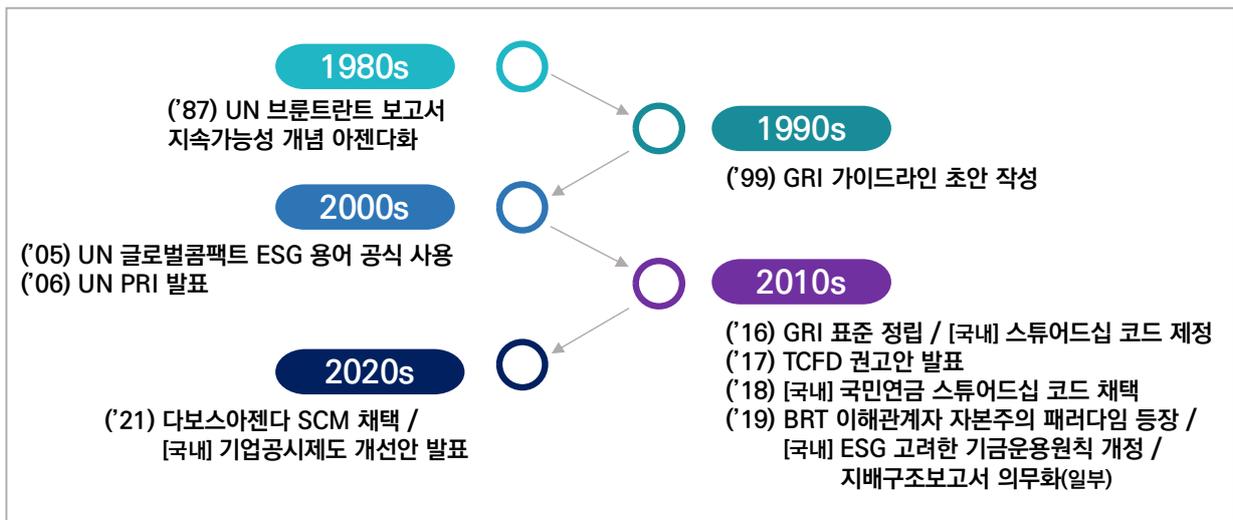
■ 지속가능성의 의미에서 국내 ESG 동향

- ◆ 극심한 기후변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최우선의 과제로 선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가능성'은 사회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 위기로 간주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일상에서 가시화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림
- ◆ 이에 따라 전 세계가 국가적 정책기조로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을 표방하며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는 정책을 곳곳에 도입하고 있음
 - 예컨대 탄소국경조정세, 배출권거래제도 등 탄소배출량과 기업의 이익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개선 등 궁극적으로 기업의 재무적인 비용과 연계되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변하고 있음
- ◆ 세계적 흐름에 따라 국내 ESG 논의 또한 기존의 연기금 중심의 책임투자 논의에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경영 공시 논의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금융위원회, 2021)
 - ESG 책임투자 논의는 '16년 스투어십십 코드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 된 이래 2018년 국민연금 스투어십십 코드 채택, 2019년 지속가능성 중심의 ESG 요소를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기금운용 원칙 개정 등으로 이어짐
 - 2019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지배구조보고서가 의무화³⁰⁾ 되었으며, 2021년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으로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차원의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제공,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단계적 의무화 추진 등이 포함됨
 - ※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재무적 정보공시 활성화를 위한 실무교육, 컨설팅 제공(예, TCFD 정보공개 지원전담반) 등 기업 친화적 지원 필요
 - 2021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을 것을 선포하였으며 국회에서는 ESG 포럼³¹⁾을 출범시킴
 - 2021년 하반기(10월)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등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게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부처별 ESG 관련 정책이 추진될 예정임

30) '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으로 '26년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전체를 포함

31) '21년 3월 발족한 초당적 ESG 정책연구모임으로 ESG 제도·정책 논의가 목표

[그림 4-1] 국내외 ESG 발전 동향



※ 출처: 저자 작성

4.2 국내 ESG 정보공개 지표 가이드라인

- ◆ 국내에서도 기업의 ESG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의 성격의 지표로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 공개 가이드스’(2021.1)에서 권고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가 등이 개발 중인 K-ESG 지표가 있으나, 이들의 권고지표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 한국거래소의 가이드라인은 국내 금융당국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2021.1)의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며, 다양한 정보공개 표준과 이니셔티브가 제시하는 지표 중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지표들을 종합하여 제시함(한국거래소, 2021)
 - 한국거래소의 가이드라인 내에 포함된 환경 관련 지표는 [표4-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조직(지배구조)부문에 ESG 와 관련된 3개의 지표와 환경부문에 온실가스배출, 에너지사용, 물사용, 폐기물배출, 법규위반·사고 항목에 대해 9개의 지표를 제시함
 - 한국거래소의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ESG 정보를 공개할 때 어떠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지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지표를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각 기업의 특성과 그에 따른 중요성(materiality)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지는 않음
- ◆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K-ESG 지표는 「산업발전법」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마련하고 있는 지표로, 2020년 4월부터 개발되어 2021년 4월 「K-ESG 지표 업계 간담회」에서 초안이 최초로 공개되었으며, 2021년 하반기 최종 지표가 발표될 예정임(산업통상자원부, 2021)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4.22)에 따르면 K-ESG 지표 초안에는 환경부문에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성과, 환경경영 검증, 법규준수로 분류되는 총 14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 문항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매출액 기준)’가 포함됨

-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권고지표의 환경(E)부문의 지표 9개보다 더 많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포괄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GRI 표준의 환경(GRI 300)부문의 32개 지표에 비해 절반 정도의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표 4-1] 한국거래소 권고지표 내 환경(E) 관련 정보공개 지표

구분	항목	지표	비고
조직	ESG 대응	경영진의 역할	ESG 이슈의 파악/관리와 관련한 경영진의 역할
	ESG 평가	ESG 위험 및 기회	ESG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의 ESG 프로세스 참여 방식
환경	온실가스배출	직접 배출량(Scope1)	회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물리적 장치나 공정에서 대기중으로 방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간접 배출량(Scope2)	회사 소비용으로 매입 또는 획득한 전기, 냉난방 및 증기배출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사용	직접 에너지 사용량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의 에너지 소비량
		간접 에너지 사용량	판매제품의 사용 및 폐기처리 등 조직 밖에서 소비된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사용 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
	물사용	물 사용 총량	조직의 물 사용 총량
	폐기물배출	폐기물 배출 총량	매립, 재활용 등 처리 방법별로 폐기물의 총 중량
법규위반·사고	환경 법규 위반·사고	환경 법규 위반·환경관련 사고 건수 및 조치 내용	

※ 출처: 한국거래소(2021)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 지난 2021년 8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존의 ESG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ESG 평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³²⁾
 -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을 마련(1999.9.)하고 이후 환경경영모범규준(2010.12)과 사회책임경영모범규준(2010.12)을 차례로 제정하여 ESG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공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국민연금 의안 분석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선정되어 의결권 행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 개정된 모범규준은 환경(E)지표를 강화 및 구체화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위험을 측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특히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크레딧(Crediting) 메커니즘, 결과기반 기후금융(RBCF, Results-Based Climate Finance)과 탄소내부가격 등 다섯 가지 유형의 탄소가격([표 4-2] 참조)을 제공하고 저탄소,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기업에게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기업에 맞는 적합한 유형의 탄소가격을 선택 및 도입할 수 있도록 함

3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0, ESG 모범규준

[표 4-2] 5가지 탄소 유형

탄소가격 유형	내용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부과하는 직접적인 세제방안으로써 부과금 (가격 고정, 감축량 불확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안(감축량 고정, 가격 불확실)
크레딧 메커니즘	감축한 배출량을 제3자 검증을 거쳐 크레딧으로 인정받고, 이를 배출권이 추가로 필요한 기업에게 판매
결과기반 기후금융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는 구조
탄소내부가격	탄소사용에 대한 내부가격을 설정하고 반영하여 저탄소 기술에 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미래의 기후 정책 및 규제에 대비

※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 ESG 모범규준, 35면 참조 저자 재구성

-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위험요인(각종 규제 및 정책 등)과 기회요인(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확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상품개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를 이유로 개정된 모범규준이 얼마만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함
 - * 예컨대 포스코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이자 산업 재해율이 높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나, “2020년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에 따르면 포스코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임³³⁾
- ◆ 상기의 권고지표들은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 ‘최소한’으로 포함되어야 할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ESG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기업들의 혼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해당 권고 지표들이 ESG 정보공개에 ‘충분한’ 지표라고 해석될 우려도 있음

33)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0, 2020년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보도자료. 2020.10.14.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 (ESG 생태계 구축) 향후 성숙한 국내 ESG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ESG 정보를 잘 공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발전하고 각 이해관계자 그룹은 신뢰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단, 국내 관련 당국이 제도적으로 접근하여 감독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그룹은 의결권자문사로 한정될 것으로 보이나, 전체 ESG 생태계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각 이해관계자 그룹 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금융 당국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2021.1)에서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제적인 ESG 프레임워크나 표준의 개선이나 발전에 따라 국내 ESG 보고 체계에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증기관의 ESG 정보 보증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 (ESG 경영 기반 조성) 궁극적으로 각 기업이 ESG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ESG 책임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실질적인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함
 - 현재 국내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ESG 지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업들의 ESG 정보공개 항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순차적으로 ESG와 관련한 공시를 강화하는 등 정보공개를 통해 책임투자를 위한 기반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ESG 책임투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업의 적절한 정보공개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바 기반조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나 단순히 기업이 정보공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ESG 경영이 가능하도록 책임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환경부문 지표 및 일관성 확대) 전 지구적 환경·기후위기 해결이 시급해짐에 따라 환경(E) 부문 지표를 확대하고, 나아가 탄소배출 제로,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제한 등과 같은 목표 달성에 맞춘 환경부문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공통된 평가지표 마련이 요구됨
 - 현재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ESG 보고체계 내 환경(E) 부문 지표를 참고하면 △ 배출 및 탄소발자국 △ 자원활용 △ 에너지 생산 및 관리 △ 수자원 생산 및 관리 △ 신재생에너지 관리 등 5개 범주로 분류될 수 있음[그림 5-1]

[그림 5-1] ESG 중 환경(E) 부문 평가지표 공통범주

주요 보고체계		평가지표 공통		
GRI	배출, 에너지 집약도, 연료 관리, 생물다양성과 생태, 폐기물	기관 A	배출 및 탄소발자국, 자원활용 에너지 생산 및 관리, 수자원 생산 및 관리, 신재생에너지 관리	폐기물, 생태적 영향, 지속가능금융
SASB	배출, 에너지 관리, 수자원 및 폐기물, 연료 관리, 생물다양성 영향, 대기질	기관 B		재료 공급, 제품 공급망, 시스템적 리스크 관리
Nasdaq	배출, 에너지 믹스, 수자원 활용, 환경적 운영, 기후 리스크, 감독	기관 C		폐기물, 생물다양성, 온실가스/탄소 정책, 녹색제품
TCFD	온실가스 수익/지출, 에너지 효율성, 재생 투자, 리스크 적응/감축			

※ 출처: Boffo et al.(2020)

- 또한 기존의 결과 중심의 환경부문 지표(배출량, 사용량 등)뿐만 아니라 TCFD의 권고안과 같이 환경과 관련된 지배구조 측면의 지표를 확대하여, 투자자들이 기업의 중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ESG 가이드라인 확장 및 공신력 확보) 환경(E)부문에 대해 더 넓은 범위에서 관련 지표를 제시하여 각 산업 및 기업 별로 중요성에 따라 적절한 정보공개 주제와 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향후 가이드라인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의 ESG 지표 가이드라인으로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모범규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지표(최종안 발표 예정)가 있으나, ESG 정보공개 활성화의 초기단계로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해 비해 GRI 표준 등의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더 넓은 범위의 환경부문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TCFD 권고안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권고하고 있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개정된 ESG 모범규준은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컨대 구체적인 감축 기준과 탄소중립 또는 탈탄소 등의 국가 목표 등과 연계되지 않아 특히 환경(E) 부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표가 희석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 발표(할) ESG 지표 가이드라인은 ESG 정보공개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건에 가까운 가이드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더 다양한 지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으로 확장하여 각 산업 및 기업별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책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평가 지표의 난립문제를 해결하고자 착수한 K-ESG 지표 마련은 지표의 통일성을 담보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K-ESG 지표의 국·내외공신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유럽연합이 「EU 택소노미 규칙」을 마련하고 ‘녹색성’과 ‘지속가능성’을 정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객관성을 확보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룩하기 위함으로 K-ESG가 법제화 되어 있는 유럽연합의 지표와 호환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을 우려가 크기 때문임

- ◆ (ESG 보고·평가체계 개선) EU 집행위원회의 ESG 평가체계 보고서와 OECD의 ESG 투자 보고서는 ESG 데이터 수집·처리·평가, 공시 및 보고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함(Boffo and Patalano 2020; EC 2020)
 - (지표의 일관성 증진) ESG 생태계의 확장에 따라 서로 상이한 ESG 보고체계로 인한 혼란의 방지를 위해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ESG 공시 공통지표를 표준화하여 ESG 프레임워크 및 평가체계 개발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함
 - (데이터의 적시성과 정확성 확보) 기업의 ESG 활동 이전시기의 데이터, ESG 지표에 맞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보고됨에 따라 평가결과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데이터 갱신 및 오류 수정이 요구됨
 - (평가방법의 투명성 제고) 평가기관이 사용하는 데이터 출처, 평가 기준(가중치 부여 근거 등)을 포함한 ESG 등급 산정 방법의 공개*가 필요함
 - * 대표적 평가기관 중 하나인 MSCI는 커뮤니케이션 포털을 개설하여 평가방법 게시
 - (산업기준 마련) 각 산업의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합의를 통해 산업기준을 개발·적용하되 인증시스템 구축, 감독·보증기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 평가기관, 자산운용사, 기업 포함
- ◆ (정부 차원의 ESG 활성화 체계 마련) ESG 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영역이나, 정부는 공공영역에서의 ESG 활성화 및 기반 조성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환경(E)부문 추가, ESG 인증제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체계 확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체계 중 △ 경영관리 범주에 환경 전략을 포함하거나 △ 주요사업 범주에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환경 측면의 계획·활동·성과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음
 - ※ 평가체계 중 △ 경영관리 범주에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등 사회(S)·지배구조(G) 항목은 포함됨
 - 단기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 전략을 포함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관의 세부 유형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할 수 있음
 - 단, 차등적인 평가체계는 기관의 사업 특성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 내재적인 한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ESG 평가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음
 - ※ 예컨대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에너지, 배출, 폐기물 등 환경 관련 성과가 주요 평가지표로 포함될 수 있으나, '현황'을 중심으로 평가할 경우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기관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이 내재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ESG 인증제 도입) 정부가 정하는 ESG 기준(예, K-ESG 지표)에 부합한 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법정인증제도로써 ESG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윤리적 소비주의'* 흐름에 맞춘 판매전략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ESG 준수 동기를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 자신의 소비가 환경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

- ESG 인증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 중인 녹색기술과 사업을 인증하는 「녹색인증제도」,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신고하고 그 등급에 따라 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등 환경 및 에너지와 관련된 인증제도를 일부 벤치마크 하여 도입할 수 있음
- 단, ESG에 대한 인증은 필연적으로 평가가 수반되므로, 정부부처 차원에서 ESG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일종의 평가체계를 '수립'하거나 특정 기관의 평가체계를 '공인'하는 형태가 될 수 있으므로 ESG 인증제 도입 전 정부부처 차원에서 기업의 ESG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음

참고문헌

〈국내문헌〉

- ◆ 금융위원회, 2021,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
- ◆ 산업통상자원부, 2021, 산업부, 한국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정립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4.22.).
- ◆ 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Samjong Insight 74.
- ◆ 성대규, 2021, 유럽연합(EU)의 통합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 안드레스 R. 에드워즈, 2010, 지속가능성 혁명, 시스테마.
- ◆ 이시연, 2021, 국내외 ESG 투자 현황 및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 KIF 금융조사리포트.
- ◆ 한국거래소, 2021, ESG 정보 공개 가이드스.
-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0, 2020년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보도자료, (2020.10.14.).
-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ESG 모범기준.
- ◆ 한민지, 2021, ESG 체제에 따른 유럽연합의 대응과 동향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법과 기업연구 제11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해외문헌〉

- ◆ BlackRock. 2020. Our approach to sustainability: 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 ◆ Boffo, R. and Patalano, R.. 2020. ESG Investing: Practices, progress and challenges. OECD Paris.
- ◆ Boffo, R., Marshall, C. and Patalano, R..2020. ESG investing: Environmental pillar scoring and reporting. OECD Paris.
- ◆ de Groot, W., de Koning, J. and van Winkel, S.. 2021. Sustainable voting behavior of asset managers: Do they walk the walk? (February 10),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783454>.
- ◆ EC. 2020. Study on sustainability-related ratings, data and research.

- ◆ GRI. 2020. Consolidated Set of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2020.
- ◆ GSIA. 2018.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 ◆ HLEG. 2017. Interim report of the 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 Financing a sustainable European economy, 12 July 2017.
- ◆ HLEG. 2018. Final report of the 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31 January 2018.
- ◆ KPMG. 2020. The time has com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0. KPMG Impact.
- ◆ Nicholas Stern. 2006. Stern Review: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 ◆ TCFD. 2017.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Final Report.
- ◆ TCFD. 2020. 2020 Status Report.
- ◆ UN. 2002. 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 UN PRI. 2021. PRI update: Q3 2021.
- ◆ WEF. 2019. Seeking Return on ESG: Advancing the Reporting Ecosystem to Unlock Impact for Business and Society. White paper.
- ◆ WEF. 2020. 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 Towards common metrics and consistent reporting of sustainable value creation. White paper.

〈웹사이트〉

-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https://sribond.krx.co.kr/contents/01/01010000/SRI01010000.jsp>
- ◆ 한국 스투어드십 코드 웹사이트. <http://sc.cgs.or.kr/participation/investors.jsp>
- ◆ IBO(Ökologisch Bauen Gesund Wohnen) 웹사이트.
<https://www.ibo.at/wissensverbreitung/ibomagazin-online/ibo-magazin-artikel/data/eu-taxonomie-verordnung-ein-weg-zum-green-deal-auch-im-immobiliensektor>
- ◆ UN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관련 웹사이트. <https://sdgs.un.org/2030agenda>
- ◆ WEF ESG Ecosystem Map 웹사이트. <https://widgets.weforum.org/esgecosystemmap>

집필진

한민지 a2pmin@gtck.re.kr
녹색기술센터 연구원

최고봉 gchoi0322@gtck.re.kr
녹색기술센터 연구원

강한나 hkang@gtck.re.kr
녹색기술센터 연구원

김민철 eco@gtck.re.kr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

2021 Vol.2 No.3

The logo for GTC FOCUS features a stylized green 'G' icon on the left, followed by the letters 'GTC' in a bold, green, sans-serif font, and the word 'FOCUS' in a larger, bold, green, sans-serif font to the right.

발행인 정병기

발행일 2021년 10월 31일

발행처 녹색기술센터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 빌딩 17층

전화 02.3393.3961

팩스 02.3393.3919~20

홈페이지 <http://www.gtck.re.kr>

I S S N 2734-1437(오프라인)
2765-1851(온라인)

디자인 리드릭 02.2269.1919

